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단위 : 명)

시험종류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임용예정기관 및 인원	
총 계				33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5급	의 무	일반의무	4	창원시 4
		7급	수 의	수 의	25	도 5, 통영시 1, 사천시 1, 김해시 2, 밀양시 1, 거제시 1, 양산시 1, 의령군 2, 함안군 2, 창녕군 1, 고성군 1, 하동군 2, 산청군 1, 함양군 1, 거창군 2, 합천군 1
		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2	도 2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중증장애)	2	창녕군 2

2. 시험 일정

원서 접수 [취소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3.(월)~2.27.(금) [2.23.(월)~3.3.(화)]	3.11.(수)	3.18.(수)~3.19.(목)	3.26.(목)

- ※ 원서접수 기간은 원서접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종료(기간 중 24시간 운영)
- 가.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남소식(시험정보란)에 게시하며,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나.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합니다.
- 다. 부득이한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고합니다.

3.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일정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직급 및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5급 이하, 연구사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다.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급	직렬	직류	응시자격
5급	의 무	일 반 의 무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고 2년 이상 보건·의료 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치과의사와 한의사 제외) • 근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의료 또는 보건 관련 분야 근무경력 (수련의 및 전공의, 공중보건 의사, 군의관 포함)
7급	수 의	수 의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연구사	수 의 연 구	수 의	
9급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중증장애)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원서접수 시 자격증 번호 등 정보입력 필수, 자격 취득 예정자인 경우 면접 최종일까지 해당 자격을 반드시 취득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 단, 9급 사회복지(중증장애) 직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1)과 2)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2026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6년 1월 1일 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행정 통·폐합에 따른 거주지 요건 착오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음)

▶ 예 시 ◀

행정구역의 통·폐합 이전 경상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장안읍·철마면·일광면·정관면 일원은 1995. 3. 1.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편입되어, 현재 행정구역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함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중증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2) 중증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3급 이상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상남도에서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기관에 일괄 조회할 예정이므로 원서접수시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다만, 응시자 본인의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는 '정부24' 홈페이지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서비스 이용 또는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를 통해 사전 확인 가능)

바. 응시자의 신체조건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5.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및 기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
 -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522-0660 / 문의시간 09:00 ~ 18:00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안내함
- 2) 접수기간 :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종료 (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5급 10,000원 / 7급·연구사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단,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면제 자격 조회'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다자녀 확인절차 이후 반환됩니다.(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JPG, PNG) 파일 필요(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
 - ※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얼굴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 불가**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별·직렬(직류)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3)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따라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원서접수기간 중 결제 완료 후에 시험 직렬(직류) 등을 변경하려면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작성 및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함
- 5)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 6)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중은 출력 가능), **해당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 7) 동일 날짜에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자 서류제출

※ **일반의무, 사회복지 면접 편의지원 제공 희망자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6. 2. 23.(월) ~ 3. 3.(화)까지

※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전형 포기자로 간주

나. 제출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 (우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는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라. 제출서류

-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증빙서류(**일반의무에 한함**)

직급	직렬	직류	증빙서류
5급	의 무	일 반 의 무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 이력서(**일반의무에 한함**) → 별첨서식 이용

- 3) 면접 편의지원 제공 요청서(**사회복지 직류 지원자 중 희망자에 한함**) → 별첨서식 이용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되므로 응시기관(임용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4년간 전출이 제한됨
-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발생,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 본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남소식(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521)으로 문의 바랍니다.